

## 2023년도 창업중심대학 초기 창업기업 모집 공고

기술창업 아이템, 아이디어,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사업화 자금 및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「2023년도 창업중심대학」과 함께 성장할 초기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3년 2월 28일
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- ※ “**초기 창업기업**” :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개시(개업 연월일)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
- ※ K-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(SCI)를 통한 실명인증이 필요합니다. 실명 정보가 SCI (서울신용평가정보)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(개명인, 외국인,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확인 불가능자)에는 사전에 SIREN24를 통해 실명 등록 및 적용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실명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)
- \* K-Startup 누리집 – 고객센터 – 온라인매뉴얼 – 일반매뉴얼 – K-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

1

### 사업개요

- 사업목적** : 우수한 기술과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초기 창업기업 대상 사업화 자금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속한 성장을 도모
- 지원대상** : 창업 개시 후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
- 지원내용** : 사업화 자금 (7천만원 내외, 최대 1억 원), 창업프로그램 등

| 사업화 자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창업 아이템, BM 고도화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* 지원 |
| * 평가에 따라 차등 배정                    |



| 창업프로그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교육, 멘토링, 마케팅, 투자유치, 실증, 기관·기업 연계 등* |
| * 창업중심대학별 프로그램 상이[별첨 2]             |

※ 사업화 자금,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은 신청한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지원

□ 협약기간 : 협약시작일로부터 8개월 이내 ('23.5월 ~ '23. 12월 예정)

□ 선정규모 : 총 219개 내외

- 창업중심대학별로 창업기업을 선발하며, 해당 권역의 창업기업 및 대학발 창업기업을 일정 비율 이상 선정 예정
  - \* 신청·접수 결과에 따라 지원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

< 6개 권역별 광역자치단체, 창업중심대학 구분 >

| 권역     | 수도권        | 강원권 | 충청권            | 호남권            | 대경권    | 동남권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|
| 광역자치단체 | 서울, 경기, 인천 | 강원  | 대전, 세종, 충북, 충남 | 광주, 전북, 전남, 제주 | 대구, 경북 | 부산, 울산, 경남 |
| 창업중심대학 | 한양대, 성균관대  | 강원대 | 호서대, 한남대       | 전북대            | 대구대    | 부산대, 경상국립대 |

- 권역 내 초기창업기업(60%) : 공고일 기준 ('23.2.28),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사업 신청 시 선택한 권역에 해당하는 초기 창업기업
  - \* 신청자(기업)의 사업자등록증 소재지(본점이 기준이며 지사 및 분점 등은 불가)를 기준으로 동일 권역 내 창업중심대학으로 신청한 창업기업
- 대학발 초기창업기업(30%) : 공고일 기준('23.2.28), 권역 내 소재한 대학교(캠퍼스 소재지 기준)의 대학(원)생 및 교원이 대표이며,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사업 신청시 선택한 권역에 해당하는 초기 창업기업
  - \* 공고일('23.2.28)을 기준으로 권역에 포함된 대학교에 재직 또는 재적(재학, 휴학)이 확인되는 경우
- 일반(40%) : 각 창업중심대학의 지원 규모 중 40% 이내는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소재지와 무관하게 우수한 초기 창업기업을 선발

< 예시 : 창업중심대학(A 권역) 초기 창업기업 선정규모 >

| (A 권역)<br>창업중심대학 | A 권역 내<br>초기 창업기업 | 대학발<br>초기 창업기업 | 일반 초기창업기업 | ⇒<br><b>대학당<br/>24개사<br/>내외<br/>선정</b>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|
|                  | 60% 이상 선정         | 30% 이상 선정      | 40% 이내 선정 |  |

## < 전체 창업중심대학 초기 창업기업 선정규모(안) >

| 권역<br>(광역자치단체)          | 대학명     | 권역 내<br>초기창업기업 | 대학발<br>초기창업기업 | 일반<br>초기창업기업 | 지원<br>규모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|
| 수도권<br>(서울, 경기, 인천)     | 한양대학교   | 60% 이상         | 30% 이상        | 40% 이내       | 24개사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성균관대학교  | 60% 이상         | 30% 이상        | 40% 이내       | 24개사     |
| 충청권<br>(대전, 세종, 충북, 충남) | 호서대학교   | 60% 이상         | 30% 이상        | 40% 이내       | 24개사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한남대학교   | 60% 이상         | 30% 이상        | 40% 이내       | 24개사     |
| 동남권<br>(부산, 울산, 경남)     | 부산대학교   | 60% 이상         | 30% 이상        | 40% 이내       | 24개사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경상국립대학교 | 60% 이상         | 30% 이상        | 40% 이내       | 24개사     |
| 호남권<br>(광주, 전북, 전남, 제주) | 전북대학교   | 60% 이상         | 30% 이상        | 40% 이내       | 24개사     |
| 강원권<br>(강원)             | 강원대학교   | 60% 이상         | 30% 이상        | 40% 이내       | 24개사     |
| 대경권<br>(대구, 경북)         | 대구대학교   | 60% 이상         | 30% 이상        | 40% 이내       | 24개사     |

\* 모집신청 마감 후, 기관별 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규모 조정을 통해 최종 219개사 내외 선정 예정

\*\* 권역 내·대학발 초기 창업기업의 경우, 신청 수요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비율이 조정될 수 있음

### ◆ 선정유형에 대한 주요예시

- ① (권역 구분) 인천시 소재 A기업은 한양대 또는 성균관대에 신청하여야 해당 권역 선정비율에 포함, 대구대에 신청하면 타 권역으로 구분
- ② (대학발 구분) 제주시 소재 00대학교 재학생 B가 창업한 C기업은 전북대에 신청하여야 해당 권역 대학발 선정 비율에 포함, 부산대에 신청하면 타 권역으로 구분
- ③ (대학발 구분) 강원도 소재의 00대학교 교수 D(창업 휴직 중)가 창업한 E기업은 강원대에 신청 시 권역 내 대학발 선정 비율에 해당

### ◆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

- ① 창업중심대학(주관기관), 사업계획서, 기타 정보 등은 모집(신청)기간 중에만 변경 가능(신청마감 '23.3.21, 16:00 후, 변경 불가)
- ② 사업신청 시, 선택한 창업중심대학(주관기관)에서 선정평가를 진행하고, 해당 창업 중심대학(주관기관)에서 최종 선정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집행 승인 및 관리,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
- ③ 신청·접수 결과 등에 따라 선정 규모는 일부조정 될 수 있음

## □ 신청자격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,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제2호 및 제3호, 제10호에 따른 초기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

- 신청가능 업력 : **2020년 2월 29일 ~ 2023년 2월 28일**
- 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 상 '개업연월일' 기준
- 법인사업자 : 법인등기부등본 상 '회사성립연월일' 기준
-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, 대표자 전원이 '신청자격'에 해당 되고, '신청 제외 대상'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
-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(개인·법인)을 보유한 경우,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(**[참고 3] 창업 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 여부 필히 확인**)  
\*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(개인, 법인)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

## □ 신청 제외 대상

###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(기업)

< ① 조건 예외 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1.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
2.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,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
3.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,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
4.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의 '재도전·재창업 재기지원보증'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·신용회복위원회의 '재창업 자금지원'을 받은 자

###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(기업)

< ② 조건 예외 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1.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
2.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

-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([참고 1]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)
- ④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[참고 2]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(기업)      ※ 중단(중단처분·중도포기자) 포함
- ⑤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\*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(기업) 중 '동 사업 접수마감일'을 기준으로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\*\*인 경우      ※ 중단(중단처분·중도포기자) 포함
- \*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: 「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」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'사업화' 유형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,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,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(예비)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
\*\*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기간이 '23.06.20. 이전 종료되는 경우, 동 사업 신청(지원) 가능  
※ 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·종료일에 관계없이 선정 가능
-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(기업)
- ⑦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·폐업 중인 자(기업)
- ⑧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(사업비 계좌)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(기업)
- \*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제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,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·등록이 되지 않은 자 (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, 가상화폐 거래소업, 가상화폐 개발업,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)
- ⑨ 동 사업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, 전담/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
- ⑩ 동 사업 (예비)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
- ⑪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(기업)
- ⑫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(기업)
- ⑬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
### 3

## 선정자(기업)의 의무 및 역할

- 선정자는 「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」 및 「창업중심대학 세부관리기준」,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,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
  - \* 지침 및 기준 등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
-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는 대응자금 (현금)을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,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
-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, 사업비의 유용·횡령·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 (선정자)에게 있고,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선정자는 대표자 사망, 법인전환 등 정당한 사유<sup>\*</sup>를 제외하고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
  - \* 정당한 사유 예시 : 법인전환, 경영부진 (동분기 매출 60% 이상 감소), 사업자 양도, 인수합병, 면세포기·적용 등

## 4

## 선정자 지원내용

**지원기간 :** 협약시작일로부터 8개월 이내 ('23. 5월 ~ '23. 12월 예정)

**지원내용 :** 사업화 자금 및 창업중심대학별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

\* 선정기업 중 우수한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 대상 추가 사업화자금 지원 검토 예정  
(추후 별도 공고, 추가 지원금액 기업당 5천만원 내외)

< 초기 창업기업 사업화자금 세부 지원 내용 >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부 지원 내용   |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시제품 제작, 자재권 취득, 사업모델(BM) 개선 등에 소요되는 <b>사업화 자금 (기업당 0.7억원 내외, 최대 1억원) 지원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(정부지원금) 차등 지원</li> <li>** 사업화 자금(정부지원금)은 창업기업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</li> </ul> </li> <li><b>총사업비 = 정부지원금 70% 이하 + 창업기업 대응자금* 30% 이상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대응자금(30% 이상) : 현금 10% 이상 + 현물 20% 이하</li> <li>**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, 사무실 임차료,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</li> </ul> </li> </ul>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< 총사업비 구성 및 예시 (정부지원금 7,000만원인 경우) > |  |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사업화<br>자금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| 총 사업비<br>(예시)  | 정부지원금   | 창업기업 대응자금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| 현금              | 현물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%   | 총사업비의<br>70% 이하   | 총사업비의<br>10% 이상 | 총사업비의<br>20% 이하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억원 (100%)   | 7,000만원 (70%)   | 1,000만원 (10%)   | 2,000만원 (20%)         |  |
| < 사업화 자금 비록 >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비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목 정의  |   |                 | 집행기준                  |  |
| 재료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, 데이터 등 무형재료를 구입하는 비용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| 한도 없음<br>(양산자금 사용 불가) |  |
| 외주용역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, 용역 계약을 통하여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,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</li> </ul> |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|

| 구분 | 세부 지원 내용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|
|    | 비목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목 정의   | 집행기준 |
|    | <b>기계장치</b><br>(공구기구, SW 등) | •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,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 |      |
|    | <b>특허권 등<br/>무형자산 취득비</b>   | •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.등록관련 비용   |      |
|    | <b>인건비</b>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소속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</li> <li>* 대표자, 대표자와 특수관계인(민법 제777조의 친족 관계의 자)는 인건비 지급 불가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   | <b>지급수수료</b>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(기술이전비,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,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, 시험·인증비, 멘토링비, 기자재임차비, 사무실 임대료, 운반비, 보험료, 보관료, 회계감사비, 법인설립비 등)</li> </ul> |      |
|    | <b>여비</b>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창업기업 대표, 재직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국가로 업무관련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</li> </ul>  |      |
|    | <b>교육훈련비</b>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창업기업 대표, 재직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</li> </ul>   |      |
|    | <b>광고선전비</b>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, 홍보영상, 홍보물 제작 등의 광고 게재,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</li> </ul>   |      |

- (초기 창업기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) 교육, 멘토링, 마케팅, 투자유치, 실증, 타 기관 및 사업 연계 등을 지원
  - 대학별로 지원 프로그램이 상이하므로 [별첨 2] 확인 후 신청자 (창업기업)의 소재지·제공 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신청

## 5

## 신청 및 접수

- **신청·접수 기간 :** '23. 2. 28(화) ~ 3. 21(화), 16:00까지
- **신청방법 :** K-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·접수([www.K-startup.go.kr](http://www.K-startup.go.kr))
- 신청·접수 시, K-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실명인증 및 ②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, 사전에 누리집 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
  - ① **실명인증** : 서울신용평가정보(SCI)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(외국인, 개명인,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,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)
  - ② **기업인증** : 공동인증서(기업용), 금융인증서, SCI기업실명인증,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1  
※ 온라인 사업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[별첨 3] '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' 참고

### < 신청 시 유의 사항 >

-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마감일 2~3일 이전에 'K-Startup 누리집'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
- \* 신청·접수는 16:00 정각에 종료(신규 신청 불가). 다만, 16:00 전에 1단계(약관동의)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, 18: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또는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 가능
- ② K-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(SCI)를 통한 실명 인증이 필요. 개명인, 외국인, 미성년자 등은 실명(개명)정보가 SCI(서울신용평가정보)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하여 K-startup 가입과 사업 신청에 제한되므로 유의  
(해당자는 SIREN24를 통해 실명등록 및 적용요청 필요,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)
- ③ '제출완료'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
- ④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,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 불가
- ⑤ 사업 신청은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,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
- ⑥ 신청자(창업기업 대표자)는, 희망하는 1개의 창업중심대학(주관기관)을 선택  
\* 해당 주관기관에서 평가 및 사업비 관리, 창업프로그램 등 제공(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)
- ⑦ 동일한 창업아이템으로 신청자를 다르게 하여 복수의 주관기관에 신청이 불가하며, 적발 시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전체 탈락 처리

○ 온라인 신청 절차

| 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|
|--|--|
| ① 회원가입 및 로그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www.k-startup.go.kr 홈페이지 접속</li></ul>  |
| ▼  |  |
| ② 사업 공고 세부내용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'사업신청관리' - '사업신청' 메뉴에서<br/>'2023년도 창업중심대학 초기 창업기업 모집 공고' 클릭</li></ul>            |
| ▼  |  |
| ③ 기본정보입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신청자(창업기업 대표자)의 기본정보 입력(1~5단계 입력)</li><li>• 주관기관 선택 : 9개 창업중심대학 중 1개 선택</li></ul> |
| ▼  |  |
| ④ 사업계획서 업로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사업계획서(가점 등 증빙서류 포함)를 업로드하여 저장<br/>※ 업로드 파일은 30MB 이하로 설정</li></ul>                |
| ▼  |  |
| ⑤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'제출하기' 클릭 및 "접수(제출)완료" 여부 확인</li></ul>   |
| ※ 사업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[별첨 3] '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' 참고 |  |

## □ 제출서류

- 사업계획서 1부 ※ [별첨 1]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작성(그 외 양식 제출 불인정)
- 기타 제출서류 ※ 해당하는 항목(가점 등)에 대한 증빙서류 추가 제출

| 검토항목 및 제출서류   | 주의사항  | 절차 |
|---|---|----|
| ① 사업신청서   | 온라인 신청시 입력  |    |
| ② 사업계획서   | 사업계획서 양식<br>작성 후 파일 첨부  |    |
| ③ 가점 (해당시)  |   |   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'22~'23년 신청 권역 내 소재 대학 졸업증명서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사업 신청 권역 내 소재 대학 졸업일이 '22~'23년인 경우</li></ul></li><li>• 공고일('23.2.28) 이전 기업이 대학(산학협력단)을 계약당사자로 체결한 기술이전(양도)계약서 등 제출</li><li>• 공고일('23.2.28) 이전 기업이 신청하는 권역 내 소재한 대학 창업보육공간 내 사업장 소재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</li><li>• '20~'22년 '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' 예비창업팀(실험실창업탐색팀) 선정(수료) 확인서 등</li><li>• '20~'22년 '학생 창업유망팀 300' 예비창업팀 선정(수료)확인서 등</li></ul> | 온라인<br>시스템<br>업로드<br>(용량<br>30MB<br>유의)<br><br>사업계획서 내<br>파일 첨부 |    |

\* 가점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,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(가점은 서류평가에만 적용)

### ◆ 제출서류 유의사항

- ❶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동 공고 내 게시된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, 신청자(기업)의 임의 양식으로 사업계획서 등 제출 시(또는 사업계획서 누락)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
- ❷ 가점 등 추가 제출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인정
- ❸ 발표평가 대상자의 경우 제출한 사업계획서 또는 별도 발표자료(제출한 사업계획서 기반) 활용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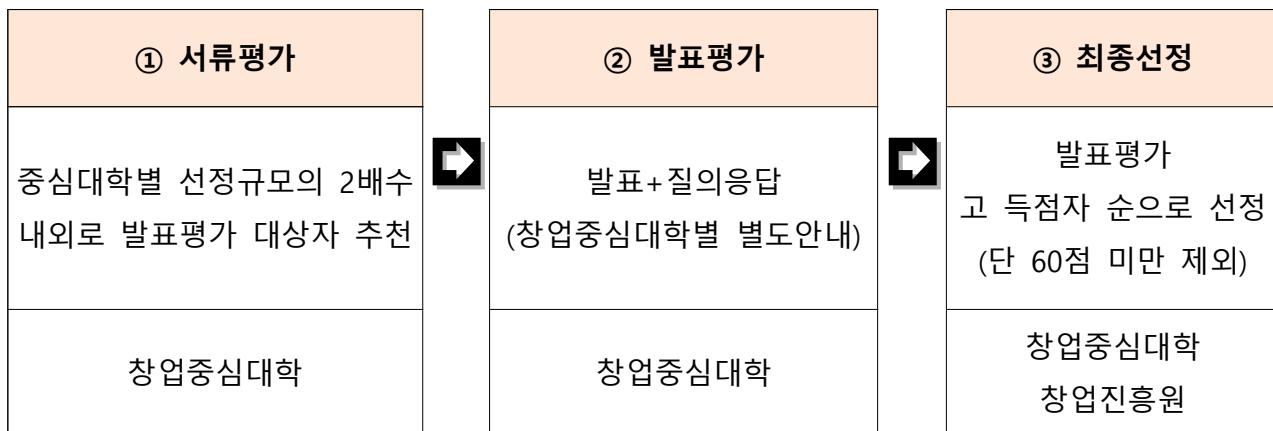
## 6

## 평가 및 선정

### □ 평가 절차 : 총 2단계 평가 (서류 → 발표)를 통해 최종 선정

\* 선정평가 운영·결과 등 세부사항은 신청 시 선택한 창업중심대학(주관기관) 별도 안내 예정

#### < 창업중심대학 초기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(안) >



- ※ 자격검토는 단계별로 상시 진행하며, 자격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탈락 처리 예정
- ※ 평가단계별 평가점수가 60점에 미달되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
- ※ 창업중심대학별 신청·접수 현황에 따라 별도의 평가절차 운영 가능

### □ 평가 방법

- ① 요건검토 : 사업계획서,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
- ② 서류평가 :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 항목 평가 (가점 포함) 및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 (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)
  -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'창업기업'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등 (별도 추가 안내)을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며, 자격 관련 위배사항 발견 시 발표평가 및 협약대상에서 제외

\* 가점은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하며, 사업 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 (미제출 시 불인정)

**< 서류평가 가점 대상 >**

| 구분            | 대상자  | 점수 | 제출서류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|----|-----------------|
| 가점<br>(최대 2점) | • 공고일('23.2.28) 이전 기업이 대학(산학협력단)을 계약당사자로 기술이전(양도) 계약을 체결한 경우           | 2점 | 기술이전<br>(양도)계약서 |
|               | • 공고일('23.2.28) 이전 기업이 신청하는 권역 내 소재한 대학 창업보육공간 내 사업장을 소재하여 사업하는 경우     | 2점 | 사업자등록증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• '22~'23년 신청 권역 내 소재 대학 졸업증명서<br>- 사업 신청 권역 내 소재 대학 졸업일이 '22~'23년인 경우 | 1점 | 졸업증명서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• '20~'22년 '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' 예비창업팀(실험실창업탐색팀) 등 참여(수료)한 자         | 1점 | 참여(수료)<br>확인서 등 |
|               | • '20~'22년 '학생 창업유망팀 300' 예비창업팀 등 참여(수료)한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점 | 참여(수료)<br>확인서 등 |

③ **발표평가** : 제품·서비스 개발 동기,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, 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\* 평가참석 : 초기 창업기업 대표자(사업 신청자) 참석 원칙

\*\* 평가시간 : 25분 이내 (발표 15분, 질의응답 10분 이내)

\*\*\* 평가방법 :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,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 가능

## □ 평가지표

○ 창업 아이템의 제품·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, 성장전략, 대표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\* 주관기관 선정규모와 관계없이, 평가 단계별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

### < 서류·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>

| 평가항목     | 세부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문제인식     | • 창업아이템을 개발하게 된 동기(문제인식)와 해결방안(필요성) 등 |
| 실현가능성    | •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발(개선)방법, 경쟁력 확보 방안 등  |
| 성장전략     | •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전략 및 지역 기반 성장계획 등        |
| 팀(기업) 구성 | • 대표자 및 고용인력이 보유한(예정인) 기술역량과 노하우 등    |

## □ 최종선정

- 모집분야별 지원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, 창업 기업별 정부지원금\*을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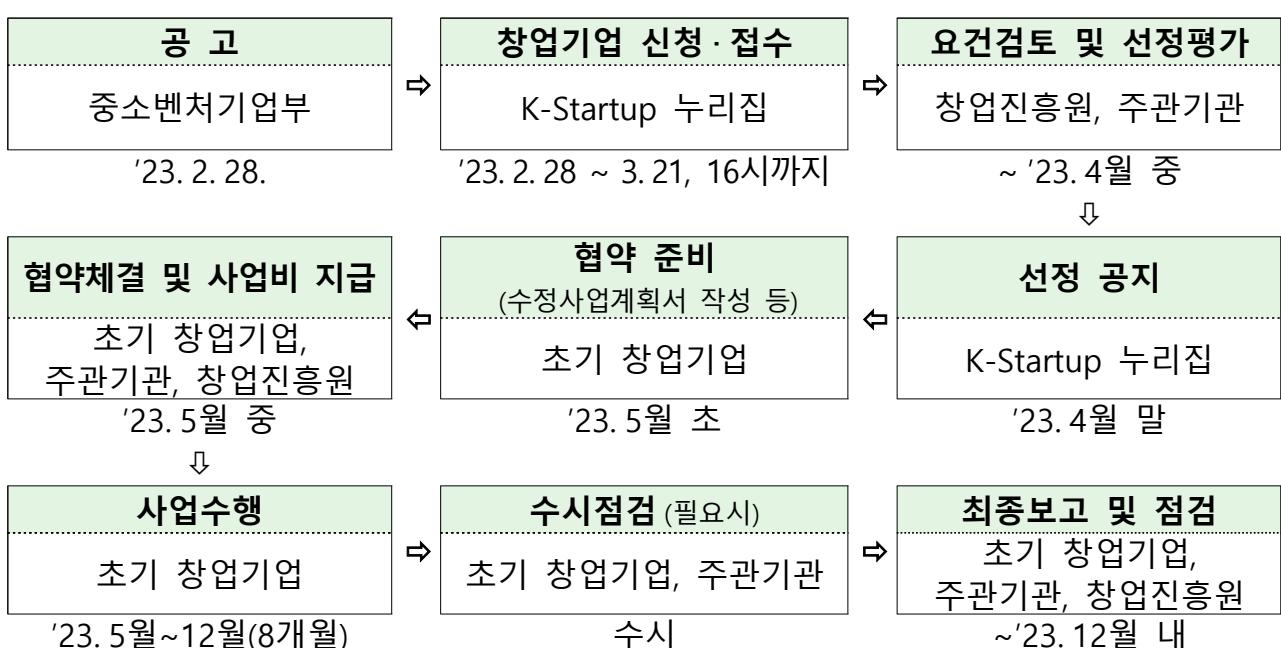
\* 창업기업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

-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주관기관 혹은 전담기관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

\*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

## □ 사업 운영일정

※ 세부 일정은 대내·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


◆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 
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.

- ①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,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,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"형법", "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", "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", "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"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, 작성자(대필자)와 신청자(대표자, 창업기업)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
- ④ 중소벤처기업부는 "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" 제32조, "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"에 따라 고의,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 할 수 있습니다.

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,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
-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, 중소벤처기업부 (창업진흥원 등)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

- \*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·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,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, 선정취소,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
- \*\* 동일·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
-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,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, 도용, 누락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'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 수행 (협약체결) 불가
- \* (주의) 2개 이상 사업의 모집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 선정되는 경우,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,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
-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,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
  - \*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,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신청 제한 시간까지 사업 신청 완료자에 한하여 평가에 참여 가능

## □ 평가 중 유의사항

-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,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
- 전 평가과정에 창업기업 대표(신청자)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,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

-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(통보일 기산, 휴일 포함) 1회에 한하여 평가운영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
-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

## □ 선정 후 유의사항

-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선정 또는 협약 취소,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「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」, 「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」, 전담·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 하여야 하며,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
-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'신청자격 및 요건'과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,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수 있으며 '창업사업통합 정보관리시스템'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·운영됨
- 동 사업의 수시·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
-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

- 협약기간 중 대표자와의 연락두절 등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, 사업비 중지 및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한 협약 해지 조치 될 수 있음
-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,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,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(사업비계좌)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(회계처리)이 가능하여야 함
  - \* 지정 은행(신한은행)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-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,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

## 8

## 기타사항

### □ 사업설명회

- '23년 창업중심대학 초기 창업기업 모집공고 온라인 사업설명회는 '23. 3. 3.(금) 16시 이후 창업진흥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
  - \* 창업진흥원 유튜브 채널 : <https://www.youtube.com/c/창업진흥원kised>
- 주요 문의사항\*에 대한 FAQ는 '23. 3. 6.(월) 이후 동 사업 공고 페이지 내 별첨파일 게시 예정 \* K-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 – 상담하기

## 사업 신청 문의

- (시스템 문의) 국번없이 1357
- (사업 문의) 창업중심대학(주관기관) 담당자

| 권역별 광역지자체 구분 |                | 창업중심대학  | 연락처 1        | 연락처 2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수도권          | 서울, 인천, 경기     | 한양대학교   | 02-2220-2857 | 02-2220-2862 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성균관대학교  | 031-290-5853 | 031-290-5656 |
| 강원권          | 강원             | 강원대학교   | 033-250-7644 | 033-250-8967 |
| 충청권          | 대전, 세종, 충남, 충북 | 호서대학교   | 041-540-9763 | 041-540-9825 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한남대학교   | 042-629-8563 | 042-629-7191 |
| 호남권          | 광주, 전북, 전남, 제주 | 전북대학교   | 063-219-5533 | 063-219-5217 |
| 대경권          | 대구, 경북         | 대구대학교   | 053-850-4371 | 053-850-4373 |
| 동남권          | 울산, 부산, 경남     | 부산대학교   | 051-510-7091 | 051-510-7093 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경상국립대학교 | 055-772-4772 | 055-772-4773 |

## 참고 1

## 창업사업화 지원제외 대상 업종

▶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

| 구분 | 대상업종   | 코드번호<br>세세분류 |
|----|--|--------------|
| 1  | 일반유통주점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6211        |
| 2  | 무도유통주점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6212        |
| 3  |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91249        |
| 4  |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| -            |

\*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kssc.kostat.go.kr) 참고

## 참고 2

##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 제외 사업 목록

- 초기창업패키지
- 창업중심대학 (초기 창업기업)
- 창업성공패키지 (청년창업사관학교)
- 글로벌창업사관학교 (사업화)
- 창업도약패키지 \* 성장촉진 프로그램 제외
- 창업중심대학 (도약기 창업기업)

### 참고 3

### 창업여부 기준표

| 구분   | 상세 구분                 |  | 창업여부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개인기업 | 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 |  | 창업 기본요건   |
|      | 타인으로부터<br>상속/증여       |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<br>이종                     | 창업아님<br>창업  |
|      | 기존 개인사업자<br>유지        | -  | 창업아님  |
|      | 기존 개인사업자<br>폐업        | 이종창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창업<br>창업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동종창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폐업 3년 초과<br>폐업 3년 까지<br>부도/파산 - 2년 초과<br>부도/파산 - 2년 까지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-  | 창업<br>창업아님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-  | 창업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-  | 창업  |
| 법인기업 | 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 |  | 창업 기본요건   |
|      | 기존 개인사업자<br>폐업        | 이종창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창업<br>창업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동종창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폐업 3년 초과<br>폐업 3년 까지<br>부도/파산 - 2년 초과<br>부도/파산 - 2년 까지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동종전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<br>개인사업자의<br>창업자 지위승계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-  | 창업  |
|      | 기존 개인사업자<br>유지        | 이종창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창업<br>창업아님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동종창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<br>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<br>50% 초과 또는 최대주주<br>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<br>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<br>50%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-  | 창업  |
|      | 자회사 여부                | 법인주주(임원 포함)가 의결권 있는<br>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소유  | 창업아님  |
|      | 과점주주 여부               |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<br>또는 출자총액의 50% 초과 소유 | 창업아님  |
|      | 회사형태 변경               | 동종유지<br>이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창업아님<br>창업  |

\* **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** :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(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)이고, 양도-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, 동종 업종,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폐업 완료, 양도기업의 권리·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

\* **동종의 범위** : '한국표준산업분류(제10차)'를 기준으로 세세분류(코드번호 5자리)가 모두 일치하면 "동종"

\* **과점주주** :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

\* **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(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)** : ① 2020.10.8.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

- "개인사업자 설립일이 '20.10.8. 이전이면서,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"한 경우 "창업"으로 판단

② 영 시행(2022.6.29.)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